



Global Tax Brief Vol. 2 (October 2026 Issue)

October 19, 2026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 세종 Global Tax Center입니다.

지난 창간호에 보내주신 따뜻한 성원과 관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급변하는 글로벌 조세 환경 속에서 기업들의 전략적 대응을 돕기 위해 발행하는 Global Tax Brief 제2호에서는 최근 국회에 제출된 세제개편안 중 국제조세 분야의 개편안을 요약해 전해드립니다. 아울러 다국적 기업이 유의해야 할 최신 국제조세 관련 주요 판례, 조세심판원 결정례 및 과세관청 유권해석의 핵심 요지를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본 뉴스레터가 귀사의 국제조세 리스크 관리와 신속한 의사결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종 Global Tax Center는 앞으로도 글로벌 비즈니스 현장에 유용한 조세 인사이트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입니다.

Contents

- I. 최근 입법동향 - 2026년 세제개편안 (국제조세 분야)
- II. 최신 법원 판례
- III. 최근 심판 결정례
- IV. 최근 예규

I. 최근 입법동향 - 2026년 세제개편안 (국제조세 분야)

재정경제부가 2026년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개편안”)의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26년 9월 3일 정기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개편안 중 법률 개정사항은 올해 12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은 향후 정부입법 과정에서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최종 확정 내용을 지속해서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이번 세제개편안 중 국제조세 분야의 주요 내용을 살펴봅니다.

(1) 글로벌최저한세 개편방안(Side-by-Side Package) 반영

개편안은 OECD Inclusive Framework가 발표한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의 개편방안인 「Side-by-Side Package」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조법”)에 반영하였습니다.

• 병행체계(Side-by-Side System) 적용면제 신설(국조법 제80조 제4항 신설)

병행체계 적용면제 규정은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 적격병행체계를 갖춘 국가에 소재하는 경우, 해당 그룹 구성기업의 소득산입규칙(Income Inclusion Rule, IIR) 또는 소득산입보완규칙(Undertaxed Profits Rule, UTPR) 추가세액을 ‘0’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적격병행체계의 요건은 ① 적격국내조세제도를 보유하고, ② 적격해외조세제도를 보유하며, ③ 적격소재국추가세(Qualified Domestic Minimum Top-up Tax, QDMTT)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제공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신설되는 병행체계 적용면제 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또는 추가세액배분액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최종모기업 적용면제 신설(국조법 제80조 제5항 신설)

최종모기업 적용면제 규정은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 적격국내조세제도를 시행하는 국가에 소재하면 그 국가에 소재한 구성기업의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을 ‘0’으로 간주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적격국내조세제도는 ①명목세율 20% 이상 ②실효세율 15% 이상 최저한세제도 보유 등을 요건으로 합니다.

신설되는 최종모기업 적용면제 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또는 추가세액배분액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실질기반 적용면제 신설(국조법 제80조 제7항 신설)

실질기반 적용면제 규정은 적격 실질기반 조세혜택으로 인한 대상조세 감소분을 글로벌최저한세 대상조세에서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추가세액 및 내국추가세액을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적격 실질기반 조세혜택’은 ‘지출’이나 ‘생산’을 기반으로 산정된 조세혜택으로서 기업의 연구개발, 유형자산 취득비용 등의 지출액이나 재화 등 생산량의 일정비율을 기준으로 하는 세액공제 등이 포함됩니다. 적격 실질기반 조세혜택은 적격인건비와 적격유형자산 감가상각비 중 큰 금액의 5.5%를 한도로 하나, 다만 해당 기업이 5년 단위 적용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의 1%를 한도로 할 수 있습니다.

신설되는 실질기반 적용면제 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또는 추가세액배분액·내국 추가세액배분액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간이실효세를 적용면제 신설(국조법 시행령 제138조의3 신설)

사업연도의 개시일 직전 24개월 이내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중 추가세액과 적격소재국추가세액이 발생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는 간소화된 계산방식을 이용하는 간이실효세를 적용면제 규정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간이실효세율이 15% 이상이거나 간이소득이 0 이하이면 해당 국가의 추가세액 및 내국추가세액을 ‘0’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신설되는 간이실효세를 적용면제 규정은 개정 시행령 시행일 이후 글로벌최저한세정보 신고서 또는 추가세액배분액·내국추가세액배분액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2) 특정외국법인(CFC) 판정기준 조정(국조법 제27조 제1항)

특정외국법인의 저세율 판정기준이 현행 실제부담세율 17.5% 이하(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의 70%)에서 15% 미만으로 완화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보다 특정외국법인 범위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개정 특정외국법인 판정기준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3) 적격소재국추가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허용(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외국에서 납부한 QDMTT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외국법인세액에 명시적으로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는 외국의 QDMTT와 국내 법인세가 중복 과세되는 경우의 이중과세를 완화하고, 국내 제도의 적격병행체계 인정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본 개정안은 개정 시행령 시행일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4)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소득세 단일세율 인상 등(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외국인근로자에게 적용되던 과세특례 단일세율이 19%(지방소득세 포함 20.9%)에서 21%(지방소득세 포함 23.1%)로 상향 조정됩니다. 또한 과세특례 적용기한도 종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연장됩니다. 본 개정안은 202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5) 국외 구조조정시 주식배당에 대한 과세이연 허용(법인세법 제18조의4,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내국법인이 완전지배하는 외국자회사가 국외 구조조정 과정에서 손자회사 지분 전부를 내국법인에게 현물배당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현물배당액 전액을 익금불산입하고 배당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시가의 95%로 계상합니다.

해당 요건에는 외국자회사와 손자회사가 동일한 조세조약 체결국에 소재할 것, 각각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했을 것, 현지법상 비과세 또는 과세이연되는 거래일 것 등이 포함됩니다. 본 개정안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배당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6) 외국자회사 적격분할 시 내국법인인 모회사 의제배당 과세이연(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외국자회사가 적격 인적분할 또는 일정한 물적분할을 거쳐 분할신설법인 주식을 내국 모회사에 분배하는 경우,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종전 주식의 장부가액을 승계합니다.

해당 요건으로는 분할하는 외국자회사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에 설립된 외국법인으로서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했을 것,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독립 가능한 사업부문으로서 자산과 부채를 포괄승계, 현지법상 비과세 또는 과세이연이 적용되었을 것 등이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개정 시행령 시행일 이후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II. 최신 법원 판례

1) 계약상 영업이익률 연동 정산금의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 - 대법원 2026. 9. 3. 선고 2026두30813 판결

(1) 사실관계 및 판결의 요지

- 내국법인인 원고는 이탈리아 법인이 생산한 상품을 국내에서 유통·판매하면서 그룹 상표를 전문매장의 간판과 상호 등에 사용할 권리를 부여받고, 매장 인테리어, 직원 활동 및 포장재 등에 관한 품질기준을 준수하였습니다.
- 양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 따르면, 원고 소매부문의 영업이익률이 정상가격 범위보다 낮으면 외국법인이 원고에게 계약상 정산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고, 정상가격의 중위 값을 초과하면 원고가 외국법인에 정산 기준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 위 계약 내용에 따라 2017년에 원고가 이탈리아 법인에게 약정된 금액을 지급하자 과세관청은 이를 상표 및

노하우 사용의 대가로 보아 사용료소득에 따른 법인세 원천징수처분을 하였습니다.

- 이와 같이 원고가 이탈리아 법인에게 지급한 계약상 정산금이 원천징수대상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국제적으로 저명한 상표를 전문매장의 간판과 상호 등에 표시한 행위가 상품의 출처와 품질을 나타내는 상표의 본질적 기능을 실현하는 사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양 당사자가 수수한 지급액도 이러한 상표 사용을 전제로 계약상 정산기준에 따라 산정되었으므로, 영업이익률을 기준으로 금액이 결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사용료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품질기준 준수와 브랜드 명성 유지가 외국법인의 경제적 이익과 상표가치 제고에 기여한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 또한 해당 지급액은 상표 사용의 대가일 뿐만 아니라 외국법인이 제공한 매장 운영 및 품질관리 기준 등 상업적 정보·노하우의 대가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유통계약에 따른 지급액과 달리 이 사건 지급액만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였더라도 실질과세원칙이나 과세형평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아, 법인세 원천징수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시사점

- 대상판결에 따르면, 관계회사 간 지급액이 형식상 ‘이전가격 조정’, ‘수익성 보상’ 또는 ‘이익 정산’으로 명명되고 영업이익률에 연동되더라도, 실제로 상표·브랜드 운영기준·영업상 노하우의 사용과 관련되어 있다면 사용료소득으로 재분류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글로벌 기업은 계약상 정산금 등의 명목에 상관없이 그 실질이 사용료소득으로 재분류될 가능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예기치 못한 과세 리스크를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에 국가별 한도 방식이 적용되는지 여부 - 대법원 2026. 9. 23. 선고 2026두30835 판결

(1) 사실관계 및 판결의 요지

- 원고는 중국 프로축구팀에서 활동한 후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일본 프로축구팀에서 선수로 활동하면서 일본에서 얻은 소득 등에 대하여 국내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습니다.
- 이 과정에서 일본에 납부한 소득세뿐만 아니라 2018년 중국에서 납부하였으나 당시 공제한도를 초과하여 2019년으로 이월된 외국납부세액도 함께 공제하였고, 과세관청은 이를 국가별 한도 방식에 어긋난다고 보아 해당 이월공제를 부인하고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습니다.
- 위 사안에서 대법원은, 원고가 국내에 가족과 함께 거주할 주거를 두고 부동산 거래, 임대업 및 축구교육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등 국내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유지하였으므로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와 일본 모두에 항구적 주거가 존재하더라도, 일본에서 얻은 소득 대부분을 국내로 송금·

소비하고 국내에 가족·부동산 및 사업활동의 기반을 두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한·일 조세조약상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역시 우리나라에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한편,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고세율 국가에서 납부한 외국세액이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세액까지 잠식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제도의 취지상, 복수 국가에서 발생한 국외소득에 대한 공제한도는 국가별로 구분하여 계산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또한 2015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가 국가별 한도 방식으로 일원화되고 종전 이월공제액도 국가별로 안분하도록 경과규정이 마련된 점 등을 근거로, 외국납부세액공제에 있어서의 국가별 한도 방식은 이전 과세기간에서 이월된 외국납부세액에도 적용되며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다른 국가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중국에서 발생하여 이월된 외국납부세액을 이후 일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공제한도에 포함하여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시사점

- 대상 판결은 이중거주자의 거주자성 판단에 관한 주요 사례일 뿐만 아니라,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국가별 한도 방식'이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외국납부세액을 이월하여 공제하는 경우에도 적용됨을 명확히 확립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집니다.
- 여러 국가에서 근무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납세자는 외국납부세액이 발생한 국가별 이월공제 잔액에 대한 한도 적용에 있어 위와 같은 판시 내용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III. 최근 심판 결정례

1) 해외 자회사의 기능·위험 및 손익 조정의 합리성이 문제된 이전가격 과세 사례 - 조심 2025서2599, 2026. 7. 2.

(1) 결정 요지

- 청구법인은 강관(Steel Pipe)을 제조·판매하는 내국법인으로, 전부 출자한 미국 소재 B사와 캐나다 소재 C사(이하 B사와 C사를 통칭하여 “쟁점외국법인”)에 완제품을 판매하고 B사에는 반제품인 G관도 공급하였습니다. B사와 C사는 완제품을 현지 제3자에게 재판매하였고, B사는 G관의 열처리·나사 가공·커플링 체결을 현지 업체에 외주한 후 완제품으로 판매하였습니다. 과세관청은 2020~2023사업연도 쟁점외국법인과 거래를 재판매거래와 제조거래로 구분하고, 각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한다고 보아 이전소득금액을 익금에 산입

하고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였습니다.

- 쟁점은 ① 쟁점외국법인을 '완전한 위험을 부담하는 유통업자 또는 제조업자'로 볼 것인지, '제한적인 위험을 부담하는 유통업자 또는 주문제조업자'로 볼 것인지(기능·위험·자산 분석), ② 처분청의 비교대상기업 선정이 합리적인지, ③ 다년도 분석의 적용이 필요한지, ④ B사의 반덤핑 관세환급금을 비경상적 항목으로 보아 정상가격 산정 시 차이조정을 하여야 하는지, ⑤ 열처리를 거치지 않은 쟁점품목을 제조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위와 같은 쟁점들에 대해 과세관청은 ① 쟁점외국법인은 재판매거래를 위한 창고를 보유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가격 가이드라인'에 따른 가격 결정 등으로 제한적 위험만 부담하므로 '제한적인 위험을 부담하는 유통업자'에 해당하되, B사는 G관에 대해서는 가공 완제품의 재고위험을 부담하여 '주문제조업자'로 보았고, ② 과세관청은 최선의 노력으로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비교대상기업을 선정하였고 세부적인 취급 제품상 차이가 있더라도 기능과 사업형태가 유사한 기업은 비교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③ 기간과세 원칙상 사업연도별 비교가 원칙이고 외부요인은 비교대상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다년도 자료를 사용할 필요가 없고, ④ 반덤핑관세 예치·환급금은 오랜 기간 경상적 손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왔고, ⑤ 미국석유회회(API)는 열처리 수행 업체만을 제조업체로 정의하므로 쟁점품목의 재판매거래 분류는 적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결론적으로,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의 정상가격 경정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① 청구법인이 '가격 가이드라인'과 전략사업팀을 통해 자회사 사업방침을 총괄한 이상 쟁점외국법인의 완전한 독립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할 경우 비교대상기업을 어떻게 선정해야 하는지도 제시되지 않았으며, ② 청구법인은 비교대상기업 수가 적다는 점 외에 비교가능성의 한계를 구체적·객관적으로 제시하지 못하였고, ③ 비교대상기업이 동일한 외부요인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입증이 없어 다년도 분석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④ 차이조정과 관련하여 관세환급금의 비경상성에 관한 구체적 증빙이 없고 관세예치금 납부 시에는 이를 매출원가에 가산하였으면서 환급금만 비경상적 수익이라 주장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으며, ⑤ API 기준상 열처리 없이 나사가공·커플링 체결만으로는 제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또한, 국조법 제17조 제1항 제3호의 과소신고가산세 면제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뿐 아니라 그 정상가격 산출방법 또한 합리적 판단에 따라 선택하여 적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나, 개별기업보고서상 비교대상기업 선정과 차이조정이 자의적이고 일관성이 없어 가산세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 시사점

- 이 결정은 해외 자회사에 대한 이전가격 과세에서 기능·위험·자산 분석, 비교대상기업 선정, 차이조정의 합리성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전가격 분석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거래 판단이 실질에 부합하는지부터 세부적인 차이조정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엄격하고 객관적인 입증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한편, 청구법인은 개별기업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고 과소신고가산세 면제를 주장했으나, 조세심판원은 보고서 내용의 합리성 부족을 이유로 부과 처분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정상가격 과세조정에 대한 가산세 면제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한 납세자의 판단이 합리적이었는지에 따라 결정되므로(국조법 시행령 제39조 제3항), 납세의무자는 보고서를 작성할 때 차이조정을 포함한 이전가격 분석이 자의적이지 않다는 근거를 갖추어야 하며, 아울러 과세당국도 보고서 작성 시점의 합리성을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IV. 최근 예규

1. 금융상품 포트폴리오 통합관리시스템 이용 대가가 사용료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전-2026-법규국조-0035, 2026.08.24.

질의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클라우드 기반 '금융상품 포트폴리오 통합관리시스템' 이용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 시스템은 온라인 접속 형태의 비독점적 서비스로, 원시 소스코드나 사내 서버(On-Premise)는 제공되지 않으며 제한된 사용 권한만 부여됩니다. 또한 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제3자 데이터 역시 공개시장 정보 및 단순 집계·편집된 결과 데이터로, 질의법인은 이를 내부 목적으로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질의법인은 해당 시스템 이용대가가 법인세법 및 한·미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인지 아니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국내법인이 시스템 산출 결과물만 이용할 뿐 시스템 내재 노하우를 전수받지 않고, 제공받는 외부데이터가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미국법인으로부터 저작권(복제·배포·개작권 등) 사용 권리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라면 해당 이용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이번 유권해석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소프트웨어 도입 대가의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에 대해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기존 구분 기준을 재확인하고,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실무적 의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향후 해외기업과 소프트웨어 계약을 체결하거나 대가를 지급할 때에는 소스코드 제공 여부, 저작권 허락 범위 등 계약 조건과 실제 이용 실태를 사전에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외국 ETF의 자본금 환급에 따른 배당에 대한 배당소득 과세 여부 - 재정경제부 금융세제과-576, 2026.06.26.

위 재정경제부 회신은 외국 상장 ETF의 자본 환급액에 대한 배당소득 과세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거주자가 외국 ETF로부터 지급받는 대가가 이익이나 잉여금의 분배에 해당한다면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번 재정경제부 회신에서는 외국 상장 ETF의 자본 감소(감자)로 인하여 지

급받는 금전의 경우,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ETF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하여 의제배당으로 과세된다고 보았습니다.

국세청은 종전까지 미국 상장 ETF에 투자한 개인이 받은 배당금을 자본의 반환 등 지급 원인과 무관하게 분배금 전부를 배당소득으로 보아 왔습니다(서면-2024-소득-4836, 2025.02.06).

이에 비해 이번 재정경제부의 회신은 자본의 감소로 볼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의제배당으로 과세될 수 있다고 하여, 배당 지급과 관련된 사실관계에 따라 과세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기존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미국 상장 ETF의 분배금에 대해 현지에서 배당소득으로 원천징수되었다가 자본의 반환으로 재분류되어 미국 원천세가 환급된 경우에도 한국에서는 그 금액에 배당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하나, 이번 재정경제부 회신에 따른 경우, 자본의 반환이 소득세법상 자본의 감소로 인해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으로 판단된다면 ETF 취득가액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배당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실관계와 해석에 따라 외국 상장 ETF의 과세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과세당국의 향후 입장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 비거주자·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인적용역에 대해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가가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신청 대상인지 여부 - 서면-2026-국제세원-2130, 2026.07.07.

내국법인인 질의법인은 국외에 소재한 외국법인 및 개인에게 음원 제작, 컨설팅 등의 외주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당 외국법인 및 개인은 국외에서 전적으로 용역을 수행하며, 국내 입국 없이 국외에서 작업 후 결과물만 질의법인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본 질의는 (1) 비거주자·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인적용역에 대해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가가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2)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신청 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1)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전적으로 용역을 수행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나, 과학기술, 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 국외에서 제공하더라도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때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2)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이번 국세청 해석은 국외에서 수행된 인적용역이라도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음을 확인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즉, 국외에서 수행된 인적용역의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그 용역의 내용이 과학기술·경영관리 등의 분야에서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서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예: 한-인도 조세 조약상 기술용역수수료). 따라서 전문기술 용역이 사용료, 인적용역, 사업소득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국내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득구분에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For Questions or Comments

- 백제흙 | 대표변호사 T. 02-316-4052 E. jhebaik@shinkim.com
- 장승연 (Maria Chang) | 외국변호사 T. 02-316-4165 E. mariachang@shinkim.com
- 윤준석 | 변호사 T. 02-316-7212 E. jseyoon@shinkim.com
- 백혜영 | 변호사 T. 02-316-4106 E. hypaik@shinkim.com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에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 23층 (우)03155 T. 02-316-4114 <https://www.shinkim.com>
